

##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97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년 10월 일  
제 출 자 : 제 천 시 장

### 1. 제안이유

-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이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중 위원회의 관할 공직자의 범위(안 제3조)
- 의회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사항 신설(안 제9조)

### 3. 의안전문 : 불임

### 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### 5. 근거법령 : 불임

- 첨부 1. 근거법령 1부.  
2. 입법예고 사본 1부.

##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
제3조제2항제1호 중 “제천시소속공무원”을 “제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천시의회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”을 “제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
제9조를 제10조로 하고,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)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기능) ①(생략)</p> <p>1. <u>법 제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u>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(생략)</p> <p>1. <u>제천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2. <u>제천시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3조(기능) ①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재산등록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</u>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 <p>1. <u>제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</u>-----</p> <p>2. <u>제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</u>-----</p> <p>3. <u>제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</u></p>
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제9조(생략)</p>	<p>제9조(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)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 <u>의 재산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,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제10조(현행 제9조와 같음)</p>

## 근거법령

### 공직자윤리법

[일부개정 2006.12.28 법률 제8098호]

제9조(공직자윤리위원회)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국  
회·대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·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·  
광역시·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.<개정 1991.11.30,  
1993.6.11, 1994.12.31, 1997.12.13>

1.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
2.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

3.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

4.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 
정한 사항

②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.<개정 1991.11.30,  
1993.6.11, 1994.12.31, 1997.12.13, 2006.12.28>

1.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  
직자에 관한 사항

2.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  
자에 관한 사항

3.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  
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
4.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 
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
5. 특별시·광역시·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·광역시·도 소속 4급 이하  
공무원,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, 특별시·광역시·도의회 소속 4급  
이하 공무원, 시·군·구의회의원, 시·군·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 
관한 사항

6. 시·군·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·군·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,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·직원, 시·군·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
7. 특별시·광역시·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·광역시·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,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
8.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

제20조의2 (국회 등에의 보고 <개정 2006.12.28>)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에 재산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28>

②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

## 공직자윤리법 시행령

[일부개정 2007. 6. 21 대통령령 제20099호]

제15조의2 (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) 법 제9조제2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·광역시·도공직자윤리위원회, 시·군·구공직자윤리위원회, 특별시·광역시·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체적인 관할은 별표 1의2와 같다.

[별표 1의2] <신설 2007.6.21>

### 특별시·광역시·도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관할(제15조의2 관련)

윤리위원회	관할 공무원
특별시·광역시·도 공직자윤리위원회	가. 시·군·구의회의원 나. 특별시·광역시·도 또는 특별시·광역시·도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·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 등 공무원,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정(지방소방정) 이하의 소방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다. 시·군·구 또는 시·군·구의회 소속 4급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

	<p>는 보수 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                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                 마. 시·도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·직원 및 그 퇴직자</p>
<p>시·군·구 공직자윤리위 원회</p>	<p>가. 시·군·구 또는 시·군·구의회 소속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                  당하는 보수 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                 나. 가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                 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                 다. 시·군·구관할 공직유관단체 임·직원 및 그 퇴직자</p>
<p>특별시·광역시 ·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 원회</p>	<p>가. 시·군·구의 교육장(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                  정」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을 제외한다)과                  그 퇴직공직자                  나. 특별시·광역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                  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 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·장학관·장학사·                  교육연구직 등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                 다. 가목 및 나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                  용된 계약직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</p>
<p>정부 공직자윤리위 원회</p>	<p>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및 시·도                  의회의원과 그 퇴직공직자                  나. 교육감, 교육위원 및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                 규정」 별표 4에 따라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과 그 퇴직공직                  자                  다.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                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 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지도직 등 공                  무원, 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준감(지방소방준감)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                 그 퇴직공직자                  라. 시·도교육청 또는 교육위원회 소속 3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                  속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보수 직위의 별정직·연구직· 지도직                  등 공무원, 장학관·교육연구관과 그 퇴직공직자                  마. 다목 및 라목의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                  된 계약직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                 바. 법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                 관한 사항</p>

1. 제주특별자치도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에 자치총경(자치경찰단장, 4급 상당) 이하의 자치  
 경찰공무원 및 그 퇴직자를 포함한다.
2. 4급에 상당하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이란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  
 정」 별표 2 제1호다목·제2호나목·제3호가목의 연구관, 별표 2의2 제1호나목·제2호나목·제3호가목  
 의 지도관을 말한다.
3. 3급 이상에 상당하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이란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의2에 따른 고위공  
 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 및 「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 
 규정」 별표 2 제1호가목·나목, 제2호가목의 연구관, 별표 2의2 제1호가목, 제2호가목의 지

도관을 말한다.

제36조 (연차보고서 작성등) ①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  
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년도의 재산등록·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현황  
및 운영실태
2.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내용 및 감독
3. 전년도의 재산등록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
4. 기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

②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의 장과 법 제8조제11항의 규  
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 
31일까지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년도의 재산등록·선물신  
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운영실태와 활동사항 등을 관할공  
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출에 관하여는 제8조 단  
서의 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1994.12.31>

제천시 공고 제 2007 - 1184

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7. 9. 7.

제 천 시 장

**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**

1. **조례명** :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**개정이유**

- 「공직자윤리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일부 규정이 법령의 내용과 불일치하여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**주요내용**

-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중 위원회의 관할 공직자의 범위(안 제3조)
- 의회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사항 신설(안 제9조)

4. **의견서 제출**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9월 27일까지 제천시장 (참조 법무감사팀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641 - 5536 , FAX 641 -5539
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), 전화번호, 주소
- 기타 참고 사항 등